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ume 14, Number 4, December, 2012: pp. 387~407
통상정보연구 제14권 4호 (2012년 12월 27일)

논문투고일자 : 2012. 06. 26
심사(수정)일 : 2012. 12. 08
게재확정일자 : 2012. 12. 21

FTA 원산지규정상의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 Transport of Rules of Origin in Korean FTAs

이영수(Young-Soo Lee)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주저자

권순국(Soon-Koog Kwon)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강사, 교신저자

목 차

Ⅰ. 서 론
Ⅱ. 직접운송원칙의 일반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Ⅲ. 직접운송원칙의 협정별 비교
Ⅳ. 직접운송원칙 사례와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기(旣)체결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선결 조건인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연구하였다. 동 원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간에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역내산(域內産)으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부여하고, 제3국을 거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물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사례와 상담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기업들은 협정별 직접운송원칙의 세부적인 규정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을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잘 활용한다면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원산지규정, 직접운송, 통과 및 환적, 원산지검증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등 8개 FTA가 발효되었고 그 상대국은 45개국이 되었다. 그리고 터키와는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정식서명, 콜롬비아와는 가서명하였고 그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GCC, 멕시코 등과 FTA 협상이 진행 중이며, 동아시아 내에서는 중국, 일본 등과의 FTA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기여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기(旣)발효된 FTA와 향후에 체결할 FTA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FTA 협정관세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를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으로는 거래당사자요건[1], 품목요건[2], 원산지상품요건[3], 직접운송(Direct Transport)요건, 원산지증명요건[4], 신청요건[5], 원산지검증요건[6] 등이 있다.

현재 세계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무역구조의 다변화로 인해 제3국을 경유해서 수출입되는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이러한 상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다.

FTA 협정별로 다소 다르게 규정하고는 있으나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 인정에 관한 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즉, 해당 상품이 원산지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동 원칙에 맞지 아니하면 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동 원칙을 위반하여 협정관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들의 사례와 사전에 위반여부나 충족요건을 상담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다. 이는 무역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업들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이 동 원칙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간과하여 협정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봄과 동시에 향후 협정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

1) 거래당사자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상품을 수출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발급신청의 주체로 자료 보관의무를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당사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를 의미한다.
2) FTA 특혜는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품목도 협정별, 국가별, 연도별로 세율이 상이하다.
3)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만 특혜의 대상이 된다.
4) 수출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야한다. 협정별로 특별히 정한 서식을 사용하며, 증명서의 발급주체 역시 협정별로 상이하다.
5) 일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데, 현재 협정관세 적용신청제도가 도입되어 원산지증명서 대신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6)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세관의 검증을 받아야하며, 검증방법은 협정별로 상이하다.

준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과 사례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FTA 관련 협정문 및 법령, 단행본, 논문,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사례연구는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하의 원산지규정 중에 관세청에서 판정한 사례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Ⅱ. 직접운송원칙의 일반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직접운송원칙의 의의

1) 직접운송원칙의 개념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간에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역내산으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부여하고 제3국을 거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상에는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8]

그러나 예외적으로 역외국을 거치더라도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이 입증되고, 환적과정에서 운송에 필요한 경미한 작업 이상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림 1]은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물품이동이 이루어질 때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이를 충족 또는 불충족하게 되는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

7) 최홍석·이영달, 「FTA 시대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1, p.184.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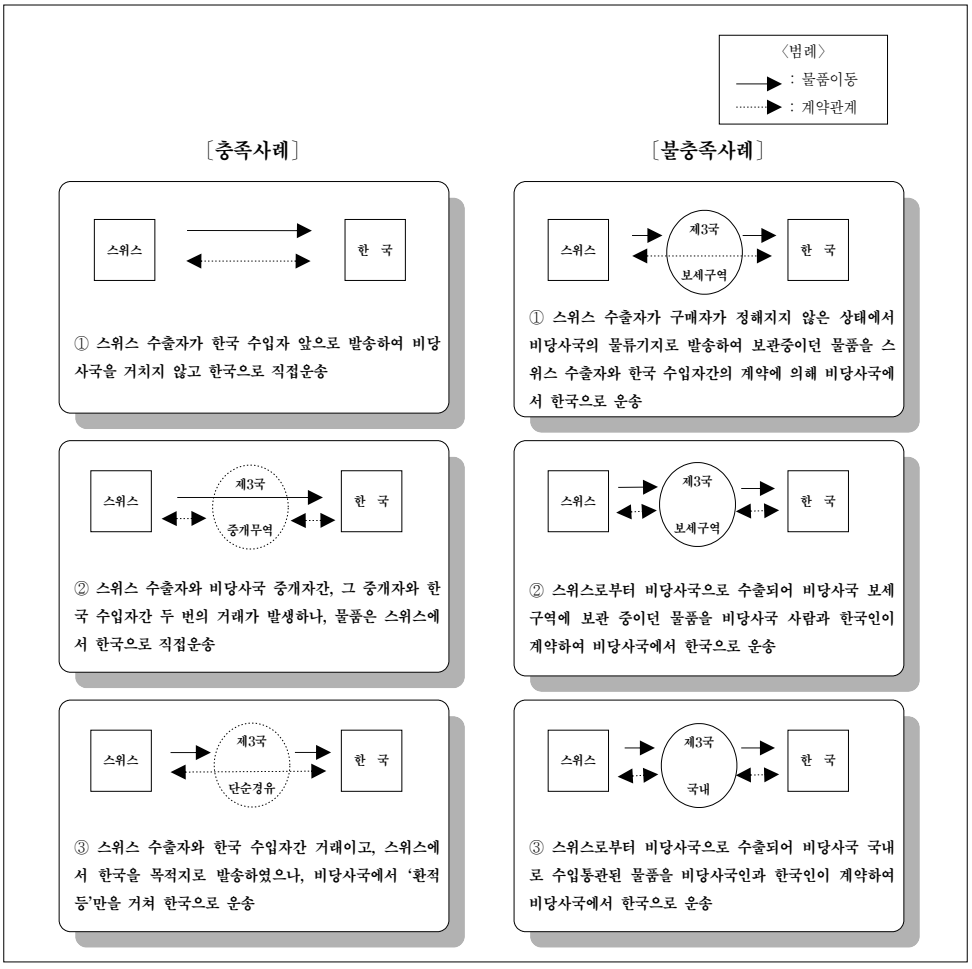

〈그림 1〉 직접운송원칙 적용사례[9)]

2) 직접운송원칙의 중요성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기준(Product Specific Rul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에 규정되는데, 동 기준은 기본원칙과 분야별 특례로 구성된다. 그리고 품목별 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9) 이영달,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2, p.52.; 서형석, "FTA 원산지 결정기준", 「EDU-FTA 강좌 자료집」, 인천공항세관, 2009, p.207.

〈표 1〉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구 분		종 류		
일반기준 (총칙)	기본원칙	- 완전생산품 - 불완전생산품 : 역내가공 + 충분가공 원칙 - 직접운송원칙		
	분야별 특례	- 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	- 중간재
		- 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 세트물품
		- 부속품	- 예비부품・공구	- 포장・용기
품목별 기준 (각칙)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가공공정기준
		- 조합기준	- 선택기준	

이러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원칙에 직접운송원칙을 두는 이유는 역내 무역 및 운송업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역내 국가의 배타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운송경로의 복잡화에 따른 제3국 물품의 역내산 둔갑을 방지하는 데 있다.

운송요건이 없을 경우 비체약국산 물품을 체약국에 반입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의 예방과 사후 원산지검증이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충분가공원칙 등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이 부분적 원산지 둔갑 방지규정이라면,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의 완전 둔갑 방지규정이라 할 수 있다.[10]

3) 직접운송원칙의 심사방법

직접운송원칙은 물품이 원산지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므로 심사대상도 제3국 경유사례가 중심이 된다. 이를 위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송품장, 화물운송장 등의 운송서류와 경유국의 보세구역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 장치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유국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서류, 반송신고서류, 보세창고 보관 영수증 등의 증명서(해당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11]

2. 선행연구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남풍우・최준호(2007), 안웅린(2007), 이제현・김연숙

10) 이영달, 전게서, p.40.
11) 성윤갑, 「FTA 원산지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p.180.

(2007), 정재완(2008), 조정란(2008), 이상진 외(2009), 박광서 외(2009), 이정용・이정희(2009), 김창봉・박주원(2010), 최창환(2010), 한상현(2010), 山神秀樹・牛島咪子(2009), Krueger(1993), Estevadeordal(2000), Kawai・Wignaraja(2009) 등의 연구가 있다.

〈표 2〉 선행연구의 요약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남풍우・최준호	-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FTA 및 원산지 전문 관세사 양성 필요
안웅린	- EU가 채택한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를 통해 한-EU FTA 원산지협상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이제현・김연숙	- 한・EU FTA에 대해 산업별 평균관세율, 무역규모와 무역지수, 수입시장 점유율 등을 분석하여 산업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시
정재완	- 원산지 결정기준 중 완전생산기준의 국내법과 FTA 규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조정란	- FTA 원산지기준이 FTA 경제효과에 미칠 영향을 분석
이상진 외	- 기체결 FTA 원산지규정 분석을 통해 수출기업의 원산지규정을 활용한 수출확대 전략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
박광서 외	- 원산지결정제도, 원산지증명서 및 확인제도 등과 같은 원산지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김창봉・박주원	-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화 방안으로 전담기관의 설치와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과감한 투자가 필요
최창환	- 원산지규정의 다양성으로 인한 스파게티 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언 제시
山神秀樹・牛島咪子	- 미국, EU, 호주, 일본 등의 주요국 원산지증명 및 검증제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과 EU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끼리 비슷한 형태를 보임
Estevadeordal	-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이 관세철폐만큼이나 시장접근협상에서 중요한 무역정책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음
Kawai・Wignaraja	- FTA 활용도와 아시안 누들 볼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복잡한 FTA 원산지규정이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원산지 결정기준의 일반기준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선결조건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별로 관련 규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협정문을 통해 살펴보고, 실제 기업들이 동 원칙을 위반한 사례와 상담을 요청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향후 기업들이 동 원칙을 충족하여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사점을 주는데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 있다.

Ⅲ. 직접운송원칙의 협정별 비교

우리나라가 기(旣)체결한 FTA의 경우 직접운송요건을 둔 경우와 두지 않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를 유럽형이라 하고, 후자의 경우를 미국형이라 한다. 각 협정별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한·칠레, 한·미국 FTA는 직접운송원칙을 두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기체결 FTA는 직접운송원칙을 두고 있다.

〈표 3〉 협정별 직접운송원칙 비교

구 분	관련 규정	직접운송원칙 유무
한·칠레 FTA	- 제4.12조 환적(transhipment) - 통일규칙 제6-1조 제3국 단순경유 입증서류	×
한·싱가포르 FTA	- 제4.15조 직접운송(direct consignment) - 제5.9조 다 제3국 단순경유 입증서류	○
한·EFTA FTA	- 부속서 Ⅰ 제1조 탁송품(consignment) - 부속서 Ⅰ 제14조 직접운송(direct consignment)	○
한·ASEAN FTA	- 부속서 3 제9조 직접운송(direct consignment)	○
한·인도 CEPA	- 제3.15조 직접운송(direct consignment)	○
한·EU FTA	- 의정서 제1조 탁송품(consignment) - 의정서 제13조 직접운송(direct consignment)	○
한·페루 FTA	- 부속서 제3.14조 직접운송(direct consignment)	○
한·미국 FTA	- 제6.13조 통과·환적(transit and transhipment)	×

자료: 각 협정문

1. 직접운송요건을 둔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등의 경우가 직접운송요건을 둔 유럽형에 속한다. 유럽형의 경우는 수출당사국 수출자에 의해 발송된 물품이 비당사국을 거치지 않고 수입당사국 수입자 앞으로 운송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운송 도중에 비당사국 영역에서 환적 등 특정행위만 이루어지고 다른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비당사국 경유 운송이 인정될 수 있다.[12]

특히 유럽형 FTA의 경우 수출당사국 사람에 의해 발송한 물품이 발송당시 수입당사국 사

12) 서형석, 전게서, p.205

람을 특정하여 발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발송당시 수입자가 확정되지 않는 보세창고도거래(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의 경우는 직접운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 한·싱가포르 FTA

"상품이 생산된 후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직접운송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 협정상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거나 환적된 경우 수입자가 제5.9조 다호의 특혜관세대우의 거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그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EFTA FTA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직접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ASEAN FTA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운송된 상품에 적용되며,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 될 것,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인도 CEPA[13)]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적으로 수송된 상품에 적용되며, 상품이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이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송되더라도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

13)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란 시장개방 보다는 경제협력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개념이다. 인도 내에서는 FTA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음을 염두에 둔 우회적인 표현이다.

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남아있었을 때 직접적으로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한·EU FTA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 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한·페루 FTA

"원산지 상품은 양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운송된 상품이거나 비당사국에서의 환적 또는 일시적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으로서 비당사국에서 거래되거나 교역되지 않아야 하고, 비당사국에서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직접운송요건을 두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칠레, 미국 등의 경우가 직접운송요건을 두지 않은 미국형에 속한다. 미국형의 경우는 수출 당시 수입당사국을 최종목적지로 하여 발송 될 필요가 없고,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당사국에서 수출하여 비당사국 보세구역에 장치하였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 때 계약하여 수입당사국으로 운송한 경우에도 특혜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경유요건만을 두었다는 점에서 유럽형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당사국 경유 물품에 특혜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세관의 통제하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어떠한 가공 또는 작업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유럽과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14]

특히 미국형 FTA의 경우 비당사국에 BWT 창고(물류센터)를 두고 물품을 거래하는 형태를

14) 서형석, 전게서, p.205.

통하여 수출입거래를 하면서 단순경유 입증 서류를 갖추었을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 가능하다.

1) 한·칠레 FTA

“상품이 생산된 후 당사국 영역밖에서 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과 재포장 또는 상품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까지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다른 종류의 작업 이외의 추가적 생산이나 작업을 거친 경우, 또는 비당사국의 영역내의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미국 FTA

“각 당사국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Ⅳ. 직접운송원칙 사례와 시사점

1. 직접운송원칙 위반 판정사례[15)]

1) 한·칠레 FTA : 와인 프랑스 경유 사례

수입업자는 수입신고번호 41370-06-1006752(2006. 6. 16)호 외 2건으로 칠레산 와인 알마비바(ALMAVIVA 0.75L)를 수입하면서 한·칠레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2006년도 수입분은

15) 판정사례는 주로 관세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기업 측의 소명(疏明) 자료 등과 같은 세세한 내용은 FTA 협정국간의 비밀유지 조항[한·칠레 FTA 제5.7조 (비밀성), 한·싱가포르 FTA 제5.16조 (비밀유지), 한·아세안 FTA 제16조 등]으로 인해 구할 수 없었다. 이러한 비밀유지 조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EFTA 부속서 Ⅰ 제26조 (비밀유지).

1. 원래 비밀이거나 비밀을 전제로 제공된 모든 정보는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지 의무 대상이 된다. 그 정보는 이를 제공한 인이나 당국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이 조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지 아니한다고 간주할 경우, 타방 당사국에게 협의를 위하여 서면요청을 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이 조항의 준수를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에 합의할 목적으로 서면요청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한다.

관세 7.5%로, 2007년도 수입분은 5%로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와인은 프랑스 바론 필립 드 로스칠드사와 칠레의 콘차이토로사가 투자하여 설립한 비나 알마비바(Vina Almaviva)가 생산한 와인으로써, 네고시앙(Negociant)[16]에게만 판매가 이루어진 물품으로, 수입업자는 직접 비나 알마비바에서 동 물품을 수입하지 못하였다.

즉, 비나 알마비바에서 네고시앙[Joanne, G.V.G(Grands Vins de Gironde), Sanamax등의 업체들]에 1차 판매된 물품을 한국의 수입업자가 프랑스 네고시앙을 통하여 재차 구입하고 있는 거래 형태를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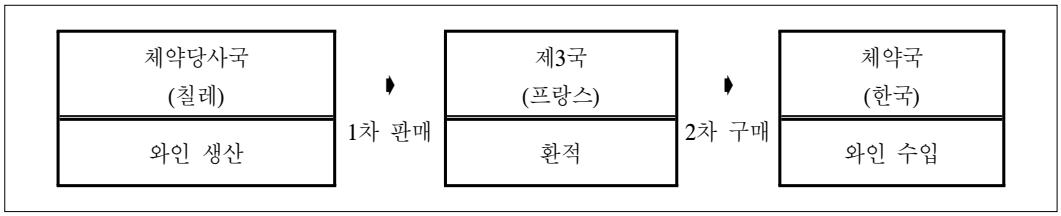

〈그림 2〉 와인 프랑스 경유 거래도

서울세관은 실지심사[17] 기간 동안 칠레에서 프랑스로 운송된 서류 또는 환적이 되었다면 환적할 수 있는 자료 및 당해 수입물품이 프랑스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수출자 등은 생산자인 비나 알마비바와 수출자 사이에 선적 관련 서류인 선하증권과 상업송장에는 당사자간 거래가격 및 거래수량, 결제조건 등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제시하여 줄 수 없으며, 세관 감시 하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분류 및 반출되었다는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서울세관은 2007년 4월 4일부터 2007년 4월 10일까지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와인이 한·칠레 FTA협정 중 '직접운송원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 총 10,837,560원을 부과하였다.[18]

---

16) 와인을 벌크로 사들여 병입을 하는 단순 유통에서부터 국제간 와인 거래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향유하면서 시장의 한가운데서 중개기능을 보이는 브로커(broker)를 말한다.

17) 동 심사는 기업심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의 확인 및 점검을 위하여 심사대상자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407호, 2010.8.19] 제2조. 심사형태별 실지심사 운용방법으로 간편심사는 수입위험도가 동일업종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 심사인원은 2명, 심사기간은 2~3일 정도로 최소한으로 운용하며, 일반심사는 수입위험도가 동일업종 평균에 가까운 업체에 대해 평상적인 수준인 심사인원 3~4명, 심사기간 4~6일 정도로 운용하고, 수입위험도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은 업체라면 중점심사 업체로 분류되는데 관세청은 이 업체에 심사인원 5~7명, 심사기간 7~10일로 최대한 늘여서 심사하는 것이다.

18) 서울세관-이의신청 2007-11호(2007.6.14).; 관세청, 「FTA·원산지 불복청구 사례분석」, 2008. 1, pp.45-49.

2) 한·칠레 FTA : 제재목(원목) 멕시코 경유 사례

수입업자는 원목 생산지인 미국, 칠레, 캐나다 등에서 원목, 제재목 등을 수입하여 이를 제재·가공하여 목제포장재(파렛트, 목상자)와 포장자재(각재, 판재류) 등을 생산한 후 국내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다.

한·칠레 FTA 협정세율(Y1, 현재는 FCL1)을 적용받은 물품은 ASERRADEROS ARAUCO 사와 CMPC MADERAS 사로부터 수입하는 제재목(라디에타소나무)과 제재목(기타)로써 수입신고시 원산지와 적출국이 모두 칠레(CL)로 신고되어 있으나 원산지(칠레: CL)와 적출국(멕시코: MX)이 상이한 1건의 수입신고 건을 발견하였는바, 동 건은 ASERRADEROS ARAUCO 사에서 수입한 제재목(HSK 4407.10-9000)으로 칠레에서 선적된 후 멕시코에서 환적하여 국내로 수입되어 원산지(CL)와 적출국(MX)이 상이함이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운송스케쥴(FIS Scheduling) 등의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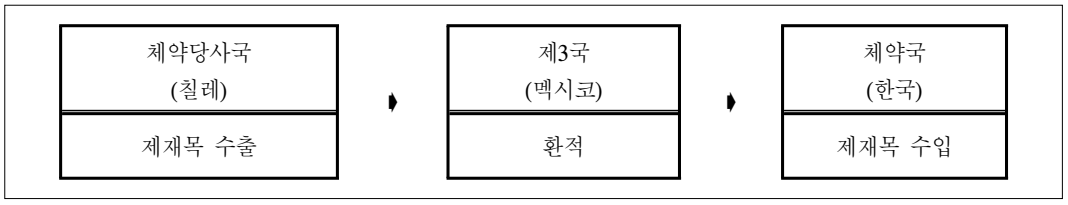

〈그림 3〉 제재목 멕시코 경유 거래도

제재목은 칠레에서 선적된 후 멕시코에서 환적하여 국내로 수입된 건으로서,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에 의거 멕시코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환적이 이루어져야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나 동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관계로 한·칠레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였다.[19]

3) 한·ASEAN FTA : 주석괴 싱가포르 경유 사례

수입업자 D사는 2007년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T사와 주석괴를 수입하기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T사는 인도네시아 방카섬 항구에 주석괴를 국내로 바로 운송할 수 있는 정기선과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물류창고가 없자 지선 수송업체인 S사로 하여금 주석괴를 싱가포르의 보세창고에 적치했다가 정기선으로 국내로 운송했다.

19) 서울세관-과세전적부심 2007-83호(2007.7.30).; 관세청, 전게자료, 2008. 1, pp.5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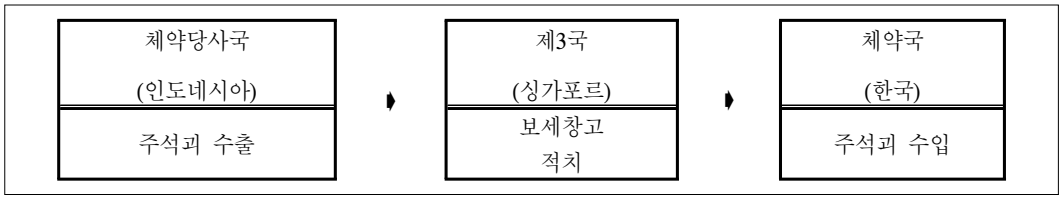

〈그림 4〉 주석괴 싱가포르 경유 거래도

D사는 세관에 주석괴 수입신고를 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라 무관세(관세율 0%) 적용을 신청했지만 '통과선하증권(Through B/L)'[20]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00여만원의 관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D사는 "국내로 주석괴를 직접 운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싱가포를 경유해 수입했고 원자재가 싱가포르에서 거래되거나 소비되지 않아 FTA상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충족한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주석괴는 재선적 외에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T사가 싱가포르를 경유해 원고에게 공급한 것은 직접운송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아세안 FTA은 현재 발효된 다른 나라와의 FTA와 달리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선하증권 종류를 통과선하증권으로 한정하고 있고, 통과선하증권을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와 기타 서류를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통과선하증권 미제출을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21]

4) 한·EFTA FTA : 화장품 독일 경유 사례

스위스에서 제조된 샴푸 포뮬러(formular)를 독일에서 수입통관 후, 독일 내 물류센터에서 병입(bottling) 과정을 통해 샴푸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한 경우, 스위스는 EFTA 체약국이나 독일은 EFTA 체약국이 아니므로, 독일에서 한국으로 운송된 것은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EFTA 특혜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추징하였다.[22]

---

20) 환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각 운송수단별로 운송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수통의 운송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렇게 할 경우 수출상이 선적서류를 약속한 선적기일 내에 구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기므로 그 개선방안으로 Through B/L 제도가 창안되었다. 즉, 환적이 불가피한 경우 최초로 운송 담당자가 발급한 단일 B/L로서 전항로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컨테이너운송 및 Forwarder's B/L에 그 예가 많다.

21) 본 판결은 아세안 FTA 협정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국내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국내 D사가 "한·아세안 FTA 관세율을 적용하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FTA 특혜관세 적용 안돼" 파이낸셜뉴스, 2012. 7. 20.

22)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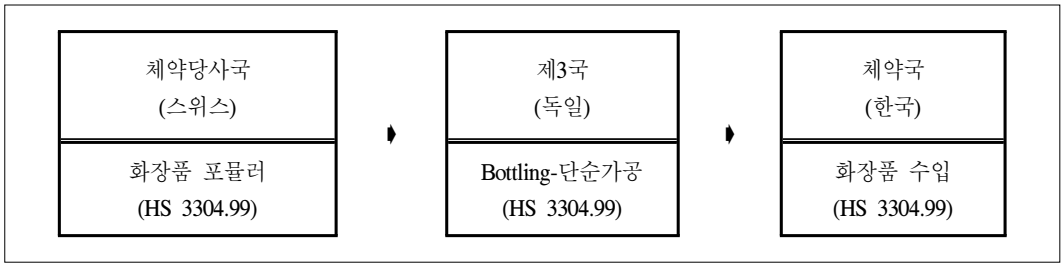

〈그림 5〉 화장품 독일 경유 거래도

5) 한·EFTA FTA : 현미경 부분품 일본 경유 사례

본사가 스위스인 다국적기업의 일본 대리점이 일본에서 수입통관된 현미경 부분품을 우리나라에 다시 수출하면서, 한·E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신청하였으나 직접운송원칙 위반 사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23] 동 사례의 경우, 제3국인 일본에 판매하였던 물품을 우리나라에 재수출을 하였기 때문이다.

2. 직접운송원칙 상담사례[24]

1) 싱가포르 물류센터의 EU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외국 자동차회사의 국내 법인으로 차량의 판매, 부품 공급 및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차량의 부품들은 벨기에로부터 한국으로 직접 수입되고 있어 한·EU FTA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런데, 만약 싱가포르에 있는 물류센터(아시아 거점 물류센터)가 벨기에로부터 수입한 부품을 한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싱가포르에서 수입되는 EU 부품에 대해서도 한·EU FTA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사례이다.

동 사례의 경우, EU 수출자가 구매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당사국(싱가포르)의 물류기지로 발송하여 보관 중이던 물품을 EU 수출자와 한국 수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비당사국에서 한국으로 운송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23)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24) 본 사례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FTA 분야 실제 상담사례 중에서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내용이다. 실제로 많은 무역기업들이 FTA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동 지원센터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담사례들을 정리하여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2) 제3국 경유시 단순 경유 입증서류 구비의 여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ASEAN FTA나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국이 아닌 다른 협정국을 경유하는 경우 수입자가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순 장치 목적 경유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사례이다.

① “한·ASEAN FTA하에서 원산지국이 필리핀인 물품을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리핀에서 발급 받은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단순 장치 목적이었음을 싱가포르 관계당국이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싱가포르를 경유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해도 되는 것인가?”

동 사례의 경우, 필리핀에서 받은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단순 장치 목적이었음을 싱가포르 관계당국이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② “한·EU FTA하에서 원산지국이 프랑스인 물품을 독일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프랑스에서 발급 받은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단순 장치 목적이었음을 독일 관계당국이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독일을 경유한다는 문구와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인보이스만 제출해도 되는 것인가?”

동 사례의 경우, EU 역내 국가이면 수출국(프랑스)과 선적(독일)이 다르더라도 EU 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경우에는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프랑스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한 송품장만 갖추어도 된다.

3) 경유항에서의 직접운송 인정 서류

“독일에 소재한 제품생산자가 복합운송 B/L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과정에서 B/L상의 선적항은 네덜란드항, 도착항은 부산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내까지 운송과정에서 싱가포르항에서 환적 후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Container No. 및 Seal No.는 관세청에 제출된 정보와 B/L상의 정보가 일치함)에는 해당 B/L을 한·EU FTA 의정서 제13조 2호의 조건 충족의 증거로 볼 수 있는가?”라는 사례이다.

동 사례의 경우, 한·EU FTA 의정서 제13조에서는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또는 수출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관세청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고시’에서는 선하증권상의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로 기재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소요

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해당 B/L을 직접운송 충족의 입증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3.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기(旣)발효된 다수의 FTA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협정과 국내 관련 법령[25]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혜택을 얻지 못한다. 직접운송원칙 위반 판정사례와 상담사례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결정을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해당 상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동 원칙에 맞지 아니하면 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직접운송원칙은 FTA 협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수의 FTA에서는 동 원칙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요건들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접운송요건과 관련된 국내 이행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으로는 FTA 관세특례법 제9조 2항[26],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27], FTA 관세특례법 특례고시 제3-5-1조[28] 등이 있다.

---

25) 원산지규정 관련 우리나라의 관련 처벌 법규로는 FTA 관세특례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동 법은 관세법에 대한 특례법이므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을 하고, 특례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6)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2항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7) 제13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 다만,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

28) 제3-5-1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세관장은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② 세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었는지의 여부와 제3국에서 운송 또는 상품의 양호한 상태 보존 목적이 아닌 작업이 수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국에서 운송 또는 보존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세관 통제 하에 있었는지의 여부 역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넷째,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 관련 입증서류로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제3국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어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3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입수가 요구된다. 특히, 한·ASEAN FTA, 한·EU FTA, 한·페루 FTA 등에서는 제출 및 증명서류가 원산지규정상에 정해져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국 입증서류는 사후에 입수가 곤란하므로 경유 당시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수출자, 운송자 등과 계약시 반드시 명문화시켜야 한다.

〈표 4〉 직접운송원칙 관련 제출 및 증명서류

구 분	제출 및 증명 서류
한·ASEAN FTA 제19조	-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 원산지증명서 원본 -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 그 밖에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한·EU FTA 제13조 제2항	-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 수출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 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한·페루 FTA 제3.14조 제3항	- 경유 또는 환적의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 또는 결합운송 문서와 같은 운송문서, 그리고 - 보관의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 또는 결합운송 문서와 같은 운송 문서와 더불어 그 비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이 작업을 승인한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문서

자료: 각 협정문

---

1.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체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예 : 스위스연방)로서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당해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

④ 서류의 제출 절차는 규칙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다.

다섯째,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시 협정관세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FTA 관세특례법[29]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제재조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국제조약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처벌유형 및 처벌수준 등은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 법률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30]

여섯째, FTA 협정국과 무역거래시 직접운송원칙의 충족여부를 기업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하거나 원산지사전심사제도(Origin Advance Ruling)[31]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FTA 관세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32]

마지막으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Origin Verification)[33]에 대비하여 관련 증명서류의 충족여부 확인과 더불어 서류를 보관[34]하여야 한다. 검증주체를 기준으로 직접검증(미국형), 간접검증(유럽형), 직접검증 및 간접검증을 혼합한 아시아형으로 나뉘어져 각 FTA 별로 상이한 원산지검증방식이 적용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이 발표한 2013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살펴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3.6%,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4%, 한국은행은 3.2%로 모두 3% 초반의 약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그나마 우리 경제가 선전할 수 있는 길이 FTA를 통한 경제영토의 확장과 이를 통한 교역확대일 것이다.

---

29) 동 법은 FTA 이행에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체약상대국가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FTA 관세특례법 제1조.

30) 김석오, "FTA 원산지규정 벌칙 법규 입법사례 비교", KIEP 전문가 간담회, 2008, p.1.; 김한성 외,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41.

31) 동 제도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수입자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기준의 충족여부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결정,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부가가치 산정 등에 대해서 미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착오 가능성을 줄여주고 있다.

32) FTA 관세특례법 제14조.

33) 원산지검증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류 등) 충족 여부와 모든 특혜요건(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34)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FTA 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FTA 관세특례법 제12조.

2012년 3월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통한 교역비중은 34.9%로 늘어났으며, 향후 서명되거나 협상 중인 FTA가 발효될 경우 그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FTA를 통한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인식과 이의 충족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의 품목별 기준과 일반기준의 분야별 특례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점은 원산지결정을 위한 선결조건 중의 하나가 직접운송원칙이라는 사실이다.

본 연구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에서 제시하였듯이 기업들은 FTA 협정별 직접운송원칙의 세부적인 규정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을 경우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즉, 제3국에서 운송 또는 보존 목적이 아닌 작업이 수행되었는지의 여부 확인과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또한, 동 원칙의 위반으로 인한 사후조치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배제, 벌칙 및 과태료와 같은 행정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담사례의 경우처럼 동 원칙의 충족 요건에 대해 기업 스스로 판단을 못할 경우 관세청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을 통해 미리 상담을 함으로써 FTA와 관련된 리스크(risk)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FTA 협정문의 직접운송원칙 조항, 국내외 관련 문헌연구와 국내의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향후 국외의 사례를 함께 비교・분석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관세청, 「FTA・원산지 불복청구 사례분석」, 2008.

관세청,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 2012.

기획재정부, 「FTA 활용 실무매뉴얼」, 2012.

김석오, “FTA 원산지규정 벌칙 법규 입법사례 비교”, KIEP 전문가 간담회, 2008.

김창봉・박주원,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0.

김한성 외,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남풍우・최준호,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연구”, 「통

상정보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박광서 외,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서형석, “FTA 원산지 결정기준”, 「EDU-FTA 강좌 자료집」, 인천공항세관, 2009.
성윤갑, 「FTA 원산지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안웅린, “EU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7.
윤영호, 「FTA 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두남, 2009.
이상진 외, “FTA 원산지규정 분석과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0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9.
이영달,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2.
이정용・이정희,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나타난 섬유・의류부문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한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제10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9.
이제현・김연숙, “한・EU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7.
이종익・박병목,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 협동문고, 2012.
정재완, “무역에서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3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8.
조정란, “한미 FTA 원산지기준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 -NAFTA 특혜관세 이용률 활용-”, 「국제통상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8.
최창환, “다양한 형태의 FTA 체결에 따른 Spaghetti Trap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
최홍석・이영달, 「FTA 시대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1.
한상현,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증명제도의 비교와 전망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6권 제4호, 한국무역연구원, 2010.
山神秀樹・牛島咪子, “自由貿易協定における原産地規則の比較研究-原産地證明・原産地檢證制 度に焦点を当てて-(1)”, 「貿易と關稅」, 日本關稅協會, 2009, 5.
山神秀樹・牛島咪子, “自由貿易協定における原産地規則の比較研究-原産地證明・原産地檢證制 度に焦点を当てて-(2・完)”, 「貿易と關稅」, 日本關稅協會, 2009, 6.

Bhagwati, J., Termites in the Trading System: How Preferential Agreements Undermine Free Trade,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Cadot, Olivier, The Origins of Goods: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Estevadeordal, A.,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No.34, 2000.

Inama, S.,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Kawai, M. and G. Wignaraja, "The Asian "Noodle Bowl": Is It Serious for Business?", *ADBI Working Paper Series,* No. 136, 2009.

Krueger, A. O., "Free Trade Agreement as Protectionist Devices: Rules of Origin", *NBER Working Paper*, No.4352. Cambridge, NBER, 1993.

ABSTRACT

A Study on the Direct Transport of Rules of Origin in Korean FTAs

Young-Soo, Lee* · Soon-Koog, Kwon**

This paper have examined the descriptive and legal approaches to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major content of direct transport in FTA rules of origin and the primary judicial precedents that arose during the executing process of FTAs.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a good satisfying the requirement of this agreement(annex, article etc.,) and which is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party and importing party.

However, products may be transported through territories of non-parties, provided that they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splitting-up of consignments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During this period the products shall remain under customs control in the country of transit.

The low perception of firms on the rules of origin was found to lead to breaking the rule and thus taking up losses. The FTA major countries enacted penalty rules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rules of origin and bring civil and criminal suit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The types and level of penalties are subject to their domestic laws of each of those nations.

With better recognition of major content of direct transport in FTA rules of origin and well-prepared countermeasures, firms will be able to enhance competitive advantage while benefiting from preferential tariffs.

Key Words : Rules of Origin, Direct Transport, Transit and Transshipment, Origin Verification

*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and Trad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Instructor, School of Economics and Trad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